DS INVESTMENT & SECURITIES

Sector Comment

[에너지|AI인프라]

BAAJA, 절차표결 통과, 이 앞엔 무엇이 남아있나

허준서 에너지·AI인프라 02-709-2669 / pos03066@ds-sec.co.kr
김현지 연구원 02-709-2663 / guswl4461@ds-sec.co.kr

2026.11.11

BAAJA(초당적 물가안정 및 일자리법), 상원 73:25 절차표결 통과로 초당적 지지 확인

데이터센터 인허가법, 송전망 개혁법 등으로 불리는 BAAJA(S.5653)가 **이미 하원을 통과한 H.R.2347(세제 관련 법안)에 대체수정안으로 포함돼 입법이 진행 중**이다. 통과된 절차표결은 기존 H.R2347에 대해 토론을 종결하고 심의를 개시하자는 내용이다. 여야의 수정을 거쳐 BAAJA에는 **송전망 건설에 대한 인허가 기간 단축에 더해 데이터센터 비용 회수 조항이 포함**됐다. 남은 절차는 **H.R.2347에 대한 본회의 심의 개시 → 이미 공개된 BAAJA의 수정안을 H.R.2347에 삽입 → BAAJA가 담긴 H.R.2347의 수정본의 통과 여부 표결**이다.

온 세상이 데이터센터의 비용분담을 부르짖는다

BAAJA가 통과될 경우 **데이터센터 비용 분담과 관련한 절대적인 기준은 AEP 오하이오, Duke 노스캐롤라이나에 적용되는 요금제와 비용회수 원칙 수준으로 끌어올려질 전망**이다. 두 관할 모두 특정 기준을 넘어가는 계약수요에 대해 통전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용량의 75-85%의 요금을 청구하는 요금제다. 취소와 지연에 대한 버퍼도 확보하고 있으며 하원에서 통과된 Ratepayer Protection Act와 BAAJA, FERC의 Show Case Order 206이 최종적으로 지향하는 구조도 이와 같다.

높아진 망투자 가시성이 불러일으킬 2차 웨이브

BAAJA가 통과될 경우 일반적으로 6-10년이 걸리던 송전망 건설 기간이 2년 수준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한다. 공급 전환속도가 획기적으로 빨라진다. 이에 더해 일부 지역구의 데이터센터 비용분담 모범사례가 연방의 표준이 된다. 수요 불확실성이 줄어든다. 인프라 구축을 담당하는 유틸리티 업체들이 매칭시켜야 할 수요와 공급이 모두 명확해지는 방향이다. 전력기기에 대한 비중확대 의견을 유지한다.

망 연결 교통정리 명확해 짐에 따라 신청부하 규모 소폭 감소하더라도 실질적 발주 환경인 계약부하 규모 증가 전망



자료: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주: 전력기기 3사 평균 상대주가 2022.01.01=100 지수화

표1 BAAJA(H.R.2347)수정안 내용 및 입법 프로세스

구분		내용
개요		11/7 공개된 494쪽 대체수정안(ANS)을 하원 통과 법안 H.R.2347(Survivor Justice Tax Prevention Act)에 통째로 삽입하는 방식으로 상원 처리. 데이터센터 비용분담은 Sec. 2107(납세자 보호)에 규정
목적		데이터센터 등 컴퓨팅 부하가 유발한 발전·송배전 증설비용이 일반 수용가에 전가되지 않도록 연방 차원의 비용회수 하한 설정
구조	송전요금 (Division A)	FERC 1994 송전요금 정책성명 개정. 기존망 요금과 증분비용 중 '높은 값' → 기존망 요금 + 증분비용 'And Pricing' ① 대상: 신규·기존 데이터센터, 규모 기준 없음. 데이터센터 그룹 단위 비용배분 허용 ② 이중청구 방지: 증분비용 납부분은 연간 송전수입요구액(ATRR)에서 차감해 타 수용가 요금 인하 ③ 비확정(interruptible) 서비스 선택 시 낮은 요금 적용 ④ 기한: 정책성명 개정 원안 270일(BPC 수정안 해설은 90일, 확인 필요) → 270일 내 규칙안 → 1년 내 최종규칙
	비용회수 하한 (Division B)	연방전력법(FPA) 228조 신설. 유틸리티는 데이터센터 공급용 발전·저장·송전·배전의 증분비용 이상을 회수, 타 수용가 부담 금지. 하한이므로 초과 청구 후 타 수용가에 환급 가능 적용 대상: 원안 20MW 이상(동일 소유 복수부지 합산, 최종 완공 기준) → 대체수정안에서 전 규모로 확대
	보증·이탈	설비 착공·증설 전 비용을 충당할 재정보증 또는 분담금 의무화(동일 증설에 기 납부분은 차감). 계약 조기 해지·구매 중단 시에도 좌초비용 회수 지속
	주 정부 권한	① 원가 초과 요금 부과 후 잉여분으로 타 수용가 요금 인하 ② 별도 요금등급(불리한 조건·접속 우선순위 허용) ③ 오픈시즌·경쟁입찰로 수용가 편익이 큰 순서로 접속 배정(선착순 대체) ④ 자가 발전원 확보 의무(BYOG) ⑤ 인출 전력량·시간 제한(Curtailment)
	적용 시점	비용회수 하한과 주 정부 요금·오픈시즌 권한은 법 시행 이후 접속 부하에 적용, 시행 전 승인 계약은 유지. 별도 요금등급 조항은 기존 시설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해석 존재
	관련 조항	Sec. 2108: 5MW 미만 디스패치 가능 BTM 자원의 도매시장 참여(18개월 내) Sec. 2114: EIA Form 861에 데이터센터 부하 보고 추가 Sec. 2117(수정안 신설): DOE 데이터센터 지역사회 지원 프로그램, 180일 내 설립, 기술정보·독립 검토 제공
	비용 규모	Grid Strategies 추정: 송전요금 조항만으로 10년간 데이터센터 부담 550억달러(현행 대비 +350억달러). 현행 데이터센터 송전요금 납부액은 연 약 20억달러 수준
타임라인	09월 30일	S.5653(BAAJA) 발의
	11월 07일	494쪽 대체수정안(ANS) 공개, H.R.2347을 입법 수단으로 사용
	11월 09일	H.R.2347 심의동의안 클로처 73-25 가결(민주당 22명 찬성), 초당적 합의 확인
	향후	대체수정안·본안 각각 클로처 가능 → 상원 통과 → 하원 동의 → 119대 의회 종료(2027.1.3) 전 서명 필요
불발 리스크		① 과도한 비용 부담 시 데이터센터의 오프그리드(자가발전) 전환 우려(ECA), Data Center Coalition 지지 유보 ② 레임덕 통과 확률 Rapidan 20~25%, TD Cowen 25%. 미통과 시 차기 의회로 자동 이월되지 않음 ③ 실효는 FERC 정책성명·규칙제정과 주 PUC 요금표 개정에 의존, 최종규칙까지 시차 존재

자료: SenateGOV,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표2 대규모 부하에 대한 전기요금 표준 파라미터인 AEP 오하이오와 Duke 에너지 노스캐롤라이나 LLT 사례

항목	AEP 오하이오 (Schedule DCT)	Duke 에너지 노스캐롤라이나 (Large Load Tariff 합의안)
적용 대상	AEP Ohio 관할의 25MW 초과 신규·증설 데이터센터 부하 단일 부지 또는 요금표상 합산 기준 적용 기존 계약은 원칙적으로 보호하되, 25MW 초과 증설 시 신규 부하에 적용	업종과 관계없이 계약수요 50MW 이상이면서 예상 12개월 평균 부하율 80% 이상, 또는 150MW 이상이면 부하율 무관. 1마일 이내 사업장 합산. 승인 시 2026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을 대상으로 2027년 1월 1일 공급분부터 적용 예정
계약기간· 최소청구	초기 계약 램프업 기간(최대 4년) + 8년 램프업 중 해당 단계 계약용량의 85%가 청구수요 하한 램프업 후에는 용량 구간별 하한과 직전 11개월 최고 청구수요의 85% 중 큰 값 적용	100MW 미만: 10년과 '램프업 + 5년' 중 긴 기간. 100MW 이상: 15년과 '램프업 + 10년' 중 긴 기간. 기존 고부하율 요금표(Schedule HLF)를 적용하면서 수요요금 청구 기준을 계약수요의 최소 75%로 설정
착공·통전 전 비용 보호	통전 목표일 전 고객이 취소하거나 프로젝트가 12개월 넘게 지연되면 별도 약정(LOA)으로 구축비 100% 상환 신용등급·현금 요건 미충족 시 계약기간 전체 최소요금의 50% 상당 담보 또는 보증 요구	전용 변전소 등 전용설비: 예상 비용을 공사분담금(CIAC)으로 선납하고 초과 실비도 부담. 공용 송전망 보강: 예상 보강비 상당의 신용장 제출. 조기 종료 시 신용장을 인출해 보강설비의 잔존 장부가액을 회수
조기 이탈	램프업 이후 5번째 계약연도가 지난 뒤 조기 종료 가능 이탈수수료는 36개월분 최소요금	계약 규모에 따라 24·36·48개월 전 통지. 통지기간 최소요금·추가설비료에 더해, 이후 잔여기간 최소요금의 25%와 잔여 추가설비료의 현재가치를 위약금으로 산정. 별도로 위약금 상당의 담보 요구
현황	PUCO 2025.7.9 승인, 시행 중 요금제 시행 후 부하 연구 요청 13.0GW 중 5,642MW가 전력공급계약(ESA) 체결 (시행 전 체결분 포함 누적 약 17.9GW)	2026.10 합의안 도출(Amazon·Microsoft·Google·Meta 지지). NCUC 승인 대기, 연말 요금 결정과 함께 판단 예정

자료: 각 사,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표3 초당적 물가안정 및 일자리법(BAAJA) 중 환경심사·인허가 개혁(Division A) - 기존안

구분		내용
개요		Division A : 환경심사·인허가 개혁
목적		에너지 인프라 구축 및 개발 사업에 대한 환경 규제 완화 및 허가 절차 간소화
관할		환경 및 공공사업 위원회(EPW)
발의안	Title I	국가환경정책법(NEPA) 개정. 환경 검토 절차 단축. 결과 의무가 아닌 절차법 명시. '주요 연방행위' 정의 축소, 상세 환경영향평가 면제 대상 확대, 심사·신청완결성 판단 기한 설정, 소송 제기기한 150일, 하자 발견 시 허가 취소 대신 환송 우선, 프로그램 환경문서 유효기간 5년→10년 등
	Title II	수질오염방지법(CWA) 개정. 수질 관련 인허가 완화. 습지 및 수질 관련 연방 허가 적용 대상 확대, 주간 송전선·가스관은 직접 점오염원 배출만 심사하고 기한은 최대 9개월, 일반허가 기간 5년→10년, 전력·통신선 등 선형 인프라에 전국 일반허가 적용 등
	Title III	멸종위기종법(ESA) 개정. 생물학적 의견에 대한 150일 제소기한 제한, 연방 기관의 ESA 제7조 협의 프로세스 및 검토 완료 기한 60일로 축소, 연방 기관의 ESA 제7조 권한을 주 정부로 위임 등
	Title IV	프로젝트 확실성 확보. EA/EIS 불요 에너지 인허가에 1년 결정기한, 특정 유형 프로젝트 차별 대우에 대한 사법 구제를 통한 프로젝트 장기간 중단 방지. 발급된 인허가의 취소·정지 금지, 정부 패소 시 인허가 원상회복과 소송·지연비용 및 기투입 총사업비의 25~50% 배상
타임라인	09월 30일	발의
	11월 09일	상원 심의동의안 클로처 표결. 본회의 예정
불발 리스크		① 풍력·태양광 인허가 모라토리엄 해제 확정 이전 민주당 이탈 우려 ② 하원에서 Huffman(민주당)의 허가확정성·ESA 조항 반대, 강경 공화당의 재생에너지 우호 조항 반대 가능성 ③ 미국 중간선거 이후 하원 다수당 구조 변화, ④ 캘리포니아 부족 지도자들의 반발 등

자료: Bipartisan American Affordability and Jobs Act(2026),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표4 초당적 물가안정 및 일자리법(BAAJA) 중 송전·접속 개혁 및 에너지 인허가(Division B) - 기존안

구분		내용
개요		Division B : 송전·접속 개혁 및 에너지 인허가
목적		연방 송전 입지·계획·비용배분·접속에 대한 송전·계통 거버넌스 개선
관할		에너지 및 천연자원 위원회(ENR)
발의안	Title I	송전선로 확충. ① 입지 - FERC 백스톱 입지권한 확대, 230kV 이상 주간 송전선이 대상, 개발자는 지방정부·FERC에 동시 제안 가능 ② 비용 - 수혜자 부담 원칙, FERC가 지역·지역간 계획·비용배분 요금처리 수립 ③ 계획 - 장기 송전계획과 발전기 접속의 통합, FERC가 비용효율적 계통 증설을 요구하고 미이행 시 페널티 ④ 접속 - SPP의 간소화 규 방식(접속·송전계획 통합, 고정가격 접속, 클러스터 참여·철회 수수료) 채택 의무화 ⑤ 데이터센터 - FERC에 컴퓨팅 부하 송전요금 개정 지시, 20MW 이상 데이터센터·고밀도 컴퓨팅 부하에 대한 별도 주 차원 보호 (RPPA의 100MW·'검토' 보다 강력)
	Title II	에너지 인허가 절차 개혁. 에너지·광업·산림 인허가 150일 제소기한 제한, 재생에너지 기한·CE, 지열·수력·해상 개혁(국립해양보호구역 통과 ROW, 해상송전 연방 조정계획)
	Title III	역사보존 절차 간소화. 국가사적보존법(NHPA) 106조 정의 축소, 단계별 기한, NEPA 일정과 정렬, 150일 제소기한
타임라인	2024년	에너지 허가 개혁법(EPRA) Manchin-Barrasso 좌초
	09월 30일	발의
	11월 09일	상원 심의동의안 클로처 표결. 본회의 예정
불발 리스크		① Division A와 리스크 동일 ② 많은 조항이 FERC·CEQ·내무부·EPA의 후속 규칙제정·이행에 의존. 법 통과 후에도 실효까지 시차 존재

자료: Bipartisan American Affordability and Jobs Act(2026),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